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18가합561898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은경

피고망 B의 소송수계인

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주옥, 김진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규

변론 종결2021. 10. 6.

판결 선고2021. 10. 20.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66,666,666원 및 그중 3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2018. 9. 11.까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2019. 11. 1.까지, 833,333,333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9. 11. 1.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당초의 피고인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9. 24. 사망하였고, 이에 망 B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의 2019. 10. 23.자 변경된 청구취지1)에는 위 주문과 같이 각 피고별 상속분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갑 제2호증은 그 명칭이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로 2017. 3.경 작성되었는바, 이는 원고를 '매도인'으로, 망 B을 '매수인'으로 하되, 망 B이 당시 원고가 보유한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50만 주를 50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고, 아울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2017. 3. 15.자로 발급된 망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거래조건'에 대한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 및 형상은 아래와 같다. 이때 위 거래조건 제1항에 명시된 '과냉각 특허'는 제품명 'G'와 관련한 것으로, 이하 'G 관련 특허'라 한다.

거래조건:1.(주) F 이 보유한 과냉각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주) H 가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생산권리및 기술이전을 포함함.

2.(주) H 로 이전한 모든설비, 자재는 (주)H 소유로한다.

3.상기거래총금액(오십억원)중 2016.12.29.일 (주) F 에
입금한 일금 오억원(5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같음한다.

4.나머지 금액사십오억원은 2017.10.30. 이십억원(2,000,000,000)과

나머지이십오억원(2,500,000,000)은 2017.11.30.일 한지불하기로 한다.

5.상기 주식매매에서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세금포함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매수인인 B 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다.

다. 한편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9.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망 B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으며,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3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에 기하여 그 매매대금 50억 원 중 원고가 이미 망 B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9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주식매매대금 4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들은 그 상속분(1/3)에 따라 각 1,366,666,66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333,333,33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9. 11.까지, 나머지 대금 중 각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7.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9. 11. 1.까지, 나머지 대금 각 833,333,333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9. 11. 1.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위조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망 B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망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도 망 B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대리발급된 것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는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다.

2)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깨어진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4232(본소), 2010다104249(반소)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감정인 I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매수인 'B' 부분의 인영과 망 B의 인감대장 및 인감증명서상에 날인된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 취지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시점 무렵, 망 B의 사무실에 쉽게 드나들 수 있었던 사정을 기화로 원고가 망 B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피고들의 2018. 10. 26.자 준비서면 8쪽 등), 그 인영의 현출이 망 B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인 점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에 따르면 일단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상 망 B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경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이에 피고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 날인행위의 진정성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을 수 있게 하는 사정을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반증 등의 증거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에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 50만 주를 양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대금 50억 원도 실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에 비추어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내용상 및 형식상으로도 문제점이나 의심점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 B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직접 날인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은 망 B의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당위성 여하나 그 내용상 및 형식상의 부당성, 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주변인들의 부지(不知)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현출된 망 B의 인감도장의 인영이 망 B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날인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시점이자, 그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2017. 3.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원고와 망 B이 함께 있는 상황에, 당시 망 B이 차임벨을 눌러 위 J가 망 B의 사무실로 들어갔고, 망 B이 인감도장을 가져오라고 하여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망 B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소외 L에게서 망 B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망 B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당시 망 B의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는 망 B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되어 이를 제3자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발급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며, 당시 망 B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은 증인 M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증언 녹취서 12쪽).

한편 을 제1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7. 3.경 H 사무실에서 망 B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소외 L은 위 시점에 망 B에게 인감도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L의 남편이 위 진술서 작성 당시 망 B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 B과의 관계 등에 기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니하여 원고 측에서 탄핵의 기회를 갖지 못해 그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없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3.경 망 B에게 인감도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J의 경우 특별히 이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할 만한 유인으로 드러난 사정이 없고, 피고들 측에서 탄핵의 기회를 가진 바 있어 그 신빙성을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갑 제10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시점 이후인 2017. 5. 1.경부터 H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전에는 사무실 출입을 위한 지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벨을 누르고 사무실을 드나들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시점(2017. 3.경)에 이미 원고가 H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망 B의 인감도장 등 입수가 용이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시점에도 어긋난다. 아울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첨부된 갑 제40, 41호증의 각 주주명부 역시 원고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기해서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된 문서임이 드러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갑 제40, 41호증의 각 작성명의인인 F의 당시 대표이사인 N은 이 법정에서 '위 각 문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고,

F의 주주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 시점을 전후한 2016년 및 2017년경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다(증언 녹취서 8, 9쪽).

그러나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명의개서 청구는 양수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5854 판결 등 참조), 이에 실제로 F의 주주명부가 갑 제40, 41호증의 각 기재와 같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양도의 효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N은 당시 F의 대표이사로 있기는 하였지만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지도 아니하고, 자금이체, 공문 작성, 인감을 떼 오거나 장부정리 정도의 일을 본 게 전부였다'는 것이며(증언 녹취서 11, 12쪽), 당시 'F의 실질적인 경영은 M가 하였고, 법인 인감 등 모든 인장 및 서류 등도 M가 관리하였다'는 것이어서(증언 녹취서 11, 13쪽), 위 N의 이 부분 증언만으로 갑 제40, 41호증의 각 문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에서 전체 문서인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위조 사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외에 당시 F이 보유하고 있었던 G 관련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망 B 또는 H가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이나 약정이 체결된 바는 없다. 그럼에도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F이 가지고 있던 특허권과 마케팅 등 그 회사의 자산이 H로 다 이전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언 녹취서 6쪽 등),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의 특허권과 관련한 망 B 또는 H의 별도 특허권 등록, 관련한 연구개발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며, 증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2017. 3.경 이후 망 B이 본인에게 G 특허권과 관련하여 '다 넘겼다, 다 빼앗았다. 이제 원고도 우리 회사 와서 근무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인바(증언 녹취서 13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망 B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G의 특허권과 관련한 권리를 명확히 이전받을 동기가 충분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관련 권리를 이전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의 경과 면에서도 자연스럽고 납득이 간다[당시 H의 G 특허권과 관련한 별도 특허권 등록 등 행보에 대하여 원고가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한 사정 등은 엇보이지 아니하고,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당시 원고가

'명확한 대가를 얻은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하여튼 원고가 협조를 잘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바가 있기도 한데(증언 녹취서 14, 15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통하여 그 특허권 관련 전용실시권 등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러한 원고 및 망 B의 태도는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들은 갑 제35호증의 약정서를 통하여 이미 H에 G의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약정서는 2016. 10. 17.경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에 따르면 'D+2년까지 마케팅을 통한 공장 미정상시'를 특수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H가 관련 권리를 취득하더라도 2018. 10.경 이후인바, 이미 그 이전부터 특허권 이전을 전제로 한 망 B와 H의 활동 내역 등은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다.

아울러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M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 관련 특허권에 관하여는 2014. 10.경 O은행에 의하여 약 300억 원 정도로 가치평가된 바 있고(관련 주식 1주당 3만 원으로 평가), 증인 M도 'O은행 평가서를 보고 망 B가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증언 녹취서 16쪽). 이에 G 관련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F의 주식 50만 주에 대한 매매대금 50억 원이,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비상식적으로 현저히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가 고소하여 진행된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관하여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라) 결국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의 복멸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해약금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은 5억 원인데, 실제로 위 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이행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점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이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도 지적하듯이 민법 제565조에 기한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의 착수 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조건 제1항에는 "주)F이 보유한 과냉각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주H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권리 및 기술이전을 포함함."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시점인 2017. 3.경 이후 망 B 및 H가 G 관련 특허권을 전제로 망 B 명의의 별도 특허권을 등록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미 그 거래조건 제1항의 이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들은 더 이상 민법 제565조에 기한 계약의 해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 50만 주의 주권이 아직 망 B 또는 피고들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교부) 외에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실제 이 사건에서 '2016. 10.경 망 B이 F에 10억 원의 자금투자를 한 이후, 망 B이 F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발행된 주권의 보유 및 관리도 망 B이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권 교부 역시 간이인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망 B은 2016. 10. 11.경 F의 상호 변경 전 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통칭하여 'F'이라 한다)에 10억 원의 자금투자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M, N의 각 증언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투자 이후, F의 임직원은 모두 망 B 측 인사로 교체되었고, 당시 F을 M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자도 망 B이며, 그 계좌를 관리하던 사람 역시 망 B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은 망 B에게 간이인도의 방식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미교부되어 아직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이행이 착수된 바 없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그 밖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주권 교부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는 아니한 채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이행거절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설령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그 효력을 유지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주권을 교부할 때까지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이미 간이인도의 방식으로 교부된 이상, 그 미교부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관용

판사전혼자

판사김진호

1) 피고(망 B)는 원고에게 4,10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2,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